

19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경제통상국 소관)

산업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경 비 별	'99 예산안		'98 당초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626,756	100	750,834	100	△ 124,078	△ 16.5
100 인 건 비	54,342	8.7	57,067	7.6	△ 2,725	△ 4.8
200 물 건 비	38,072	6.1	44,915	6.0	△ 6,843	△ 15.2
300 이 전 경 비	192,501	30.7	190,286	25.3	2,215	1.2
400 자 본 지 출	298,592	47.6	413,486	55.1	△ 114,894	△ 27.7
500 용 자 및 출 자	4,922	0.8	6,000	0.8	△ 1,078	△ 17.9
600 보 전 재 원	5,797	0.9	4,346	0.6	1,451	33.4
700 내 부 거 래	24,152	3.9	21,704	2.9	2,448	11.3
800 예비비 및 기타	8,378	1.3	13,030	1.7	△ 4,652	△ 35.7

○ 충청북도 일반회계 '99년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98년 당초 예산 7,508억 3천 4백만원 대비 16.5%인 1,240억 7천 8백만원이 감액된 6,267억 5천 6백만원임.

2.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경 비 별	'99 예산안		'98 당초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37,749	100	8,873	100	28,876	325.4
100 인 건 비	9	-	9	-	-	-
200 물 건 비	636	1.7	547	6.2	89	16.3
300 이 전 경 비	19,741	52.3	2,045	23.1	17,696	865.3
400 자 본 지 출	2,363	6.3	3,272	36.9	△ 909	△ 27.8
500 용 자 및 출 자	-	-	-	-	-	-
600 보 전 재 원	-	-	-	-	-	-
700 내 부 거 래	15,000	39.7	3,000	33.8	12,000	400
800 예 비 비 및 기 타	-	-	-	-	-	-

○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중 경제통상국 예산 점유율은 6.0%

3. 예산 편성 개황

199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 377억 4천 9백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99 공공근로사업 140억 5천 5백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비 10억원, 고용촉진훈련비 13억 1천 5백만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시설비 11억 5천 3백만원으로 총 175억 2천 3백만원으로 46%를 점하고 있으며,

도 자체재원 202억 2천 6백만원 중에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금 28억 1천 7백만원이 포함되어 실가용자체 재원은 174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재원투자 내용을 보면

법적 경비, 기본적 행정비 등을 충당하고 순 자체투자 사업으로는 167억 6천 4백만원이 투자되어 충청북도의 기능별 세출 예산중 비교적 자체재원 투자가 높은 부분으로 이는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예산 규모	국 고 보 조 교 부 세 양 여 금	자 체 재 원 (54%)		
		국보보조부담	법 적 경 비 기 본 적 행 정 비	자 체 투 자
37,749 (100%)	17,523 (46%)	2,817 (8%)	645 (2%)	16,764 (44%)

검 토 의 견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의하여 편성되는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입니다.

기본적인 예산 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 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9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실업대책, 중소기업고용창출, 국제수지개선분야에 중점 투자 원칙으로 하여 경상적 경비 등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감액 편성되어 있으며, 국제교류분야에 있어서는 '98년 당초 예산액을 상회하는 항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 충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은 기건립한 청주시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만 건축하고 시설관리 주체를 설정하지 못하여 준공이후에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 재원이 국고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시비가 50% 포함하는 사업인 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3.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조성비는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과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으로 기금은 의회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바, 금번 예산심의시 기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9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원칙을 두고 경상적 경비는 감액 편성하고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국제통상분야를 강화한 성실하게 예산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